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18682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피고 1. A

2.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19. 10. 16.

판결 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4,224,310원과 그중 131,622,362원에 대하여는 2019. 5. 7.부터, 300,936,719원에 대하여는 2019. 6. 17.부터 각 2019. 7. 2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1.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1. 18. 접수 제18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 신용보증약정	대출보증	2016. 7. 1.	2024. 6. 28.	1,278,000,000원
제2 신용보증약정		2016. 9. 19.	2017. 9. 18.	144,000,000원
제3 신용보증약정		2017. 1. 20.	2026. 1. 19.	315,000,000원
합계		1,737,000,000원		

나)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에 보증금액 12억 7,800만 원, 보증기한 2024. 6. 28.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2016. 9. 19.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 사천동지점에 보증금액 1억 4,400만 원, 보증기한 2017. 9. 18.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으며(이후 위 보증기한은 2019. 3. 15.로, 보증금액은 1억 2,96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2017. 1. 20.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에 보증금액 3억 1,500만 원, 보증기한 2026. 1. 19.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따라 9억 3,400만 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에 따라 3억 4,500만 원 상당의 각 재창업자금을 지원받고,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는 2019. 3. 15. 피고 은행에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5. 7. 피고 은행에 131,622,362원을, 2019. 6. 17.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합계 300,936,71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의 피고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 A는 2019. 1. 1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은행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은행에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1. 18. 접수 제18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음성군청 및 김제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1. 18.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2개월가량 경과된 2019. 3. 15.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5. 7. 피고 은행에, 같은 해 6. 17.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각 D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청구에 따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가 피고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 A의 자력,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수익자인 피고 은행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계속된다면 위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담보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는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피고 은행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반환방법과 범위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사해행위가 근저당권설정행위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은행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강균

별지